

## 교육과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7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교육과정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명칭)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교육과정위원회 000대학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조(구성)

-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과(전공)수가 7개 이상인 대학은 예외로 한다.
- 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각 학과(부)장 및 전공 주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학과(부)장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자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과대학(연계융합전공)별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2. 단과대학 전공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3. 단과대학 전공교과과정 혁신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4. 전공기초교양 과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사 교과목의 통합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에 부수되는 사항

제6조(회의)

- ① 회의는 교무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 ①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회의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분과위원회 안건 중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8조(교과과정 개편)

- ① 교과과정의 개편 주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교과 과정을 개편한다.
  1. 학문의 변화와 발전, 사회 수요의 변화가 있을 때
  2. 교과과정과 관련된 법적 조치가 있을 때
  3. 교과과정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 ② 제1항의 개편 주기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필요한 때는 개편 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교과과정의 주요 내용)

① 학과 전공 교과과정표 개편 요구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과의 교육목표
2. 향후 진로별 전공 로드맵
3. 전공과목 편성 현황표(최근 3개년 개설 여부 표시)
4. 제1호 내지 제3호를 반영한 변경사항 및 변경 사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교과과정 개편 심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대학의 교육목표
2. 학과별 교과과정 개편 논의 과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3. 학과 교육목표와 대학 인재상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4. 해당 대학 교과과정 개편의 주요 내용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전공 교과과정의 개편 절차)

① 학과(전공)의 전공교과과정 및 전공기초교양을 개편하고자 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접수된 개편안을 심의에 회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전공기초교양 개편안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학장에게, 전공교과과정 개편안은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및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